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4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9.

복지문화 위원회
전 문 위 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17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○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○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등 6명

○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
○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
○ 검토기간: 2025. 9. 3.(수) ~ 9. 12.(금)

2. 제정이유

○ 본 조례안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,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활용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,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·인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시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~제4조)

다. 실태조사, 실행계획 수립,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5조~제7조)

라. 위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
마. 홍보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

○ 이 제정조례안은 정보접근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과 활용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5조에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립을 위한 취약계층 현황,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사업 계획, 교육·훈련 계획,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콘텐츠 보급, 정보화 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,
-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을 전문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해 추진사업을 홍보하도록 규정함.

○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에 따르면,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83.5%로 전년(82.8%) 대비 0.7%p 부문별로는 접근 수준이 98.1%(전년 98.0% 대비 0.1%p↑), 역량 수준이 76.1%(전년 75.6% 대비 0.5%p↑)로 일반국민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가 신체적·인지적 제약 등의 불편함 없이 정보에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1. 28.] [법률 제18334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3. 21., 2009. 5. 22., 2010. 5. 11., 2011. 3. 29., 2011. 6. 7., 2013. 3. 23., 2016. 2. 3., 2017. 9. 19., 2020. 6. 9.>

1.～7.

8. “정보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.

가. “전자정보”라 함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 이 경우 “자연인 및 법인”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나. “비전자정보”라 함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, 문자, 한국수어, 점자, 몸짓,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, 그 생산 · 획득 · 가공 · 보유 주체가 자연인 · 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.

다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.

9.～21.

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 ①개인 · 법인 ·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개인 등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, 점역, 점자교정, 낭독, 대필,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 · 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 · 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6. 2. 3.>

제22조(개인정보보호)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,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 · 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

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1. 3. 29.>

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· 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「민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3조(정보접근 ·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· 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 · 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· 제작 · 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·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, 구화,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,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 1. 28., 2016. 2. 3., 2017. 12. 19.>

□ 장애복지법

[시행 2025. 7. 3.] [법률 제19901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

제22조(정보에의 접근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·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, 그 밖의 교육 · 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(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

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2. 19.>

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(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, 음성도서,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·보급하고,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·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6. 29.] [법률 제19302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4조(접근권)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,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□ 지능정보화 기본법

[시행 2025. 3. 27.] [법률 제20410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
제45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6조(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· 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 ·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3. 26.>

1. 웹사이트
2.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
3.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, 정보 제공, 상품 주문 ·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(이하 “무인정보단말기”라 한다)
4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· 무선 정보통신

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(이하 “지능정보제품”이라 한다)를 설계, 제작, 가공할 때 장애인 ·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장애인 · 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⑤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 · 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, 검증절차,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격차해소교육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4.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